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 (제 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20.12.4일, '바누아투'가 최빈개발도상국을 졸업함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대상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나.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 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바누아투'를 제외

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2의 일부 개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생용 마스크 등 (6307.90호), 터치스크린(8537.10호),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 등(9032.89호) 품목번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2) 입법예고(2020. 10. 20. ~ 11. 30.)

대통령령 제 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	
연 락 처	(044) 215 - 4462